

# **평창군반설치조례일부개정조례안 심사 보고서**

## **1. 심사 경위**

- 가. 제안일자 및 제출자 : 2005. 12. 16 (금) 평창군수
- 나. 회부일자 : 2005. 12. 21(수)
- 다. 상정일자 : 2005. 12. 23(금) 제125회 평창군의회(정례회)  
제1차조례심사특별위원회(2005.12.23) 상정·수정의결

## **2. 제안설명의 요지**

(신영선 자치행정과장)

### 가. 제안이유

- 지방행정의 최일선에서 주민과 행정간의 가교역할을 수행하고 있는 핵심인력이나, 최근 들어 생활민원 폭주, 생업지장 등의 사유로 직책 수임을 기피함에 따라 일선행정 업무수행에 장애요인이 되고 있음.
- 또한 지금까지 시행하여 오던 각종 반장 사기진작 시책이 '05. 8. 4 개정 공포된 공직선거법에 저촉될 소지가 있어 본 사업의 지속적인 추진을 위해서는 제도적 보완이 필요한 실정임.
- 이에 따라 반장 직책에 대한 자긍심 고취와 사기진작을 위하여 실질적인 처우개선책을 제도적으로 마련하려는 것임.

### 나. 주요골자

- 반장의 임무수행 능력배양과 사기진작을 위하여 예산의 범위안에서 향토지 및 교양도서 보급, 상해보험 가입 등에 필요한 경비 및 편의를 제공할 수 있도록 함. (안 제12조)

### **3. 전문위원의 검토보고 요지**

(전문위원 : 함경호)

- 가. 행정의 최일선에서 행정을 수행하는 반장들에게 제공되었던 향토지 및 교양도서 보급, 상해보험 가입 등에 필요한 경비 지원 등의 사기진작 시책이 '05. 8. 4 개정된 공직선거법에 저촉될 소지가 있음에 따라 그간 추진하던 사기진작시책의 지속적인 추진을 위해 제도적으로 보완하려는 것으로
- 나. 개정 내용은 제12조 본문을 제1항으로 하고, 동조에 제2항을 신설하여 군수는 반장의 임무수행 및 능력배양과 사기진작을 위하여 예산의 범위안에서 향토지와 교양도서 보급 및 상해보험 가입 등에 필요한 경비를 지원하는 것을 주요 내용으로 하고 있는 것으로 반장들의 사기 진작을 위하여는 필요하다고 사료되며
- 다. 기타 조례안의 특별한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판단되었음.

### **4. 질의 및 답변요지**

질의요지	답변요지
○ 향토지나 교양도서에 대하여 조례에 굳이 명시할 필요성이 있는가 ?	○ 조례에 명시하지 않으면 지난 8월 4일 개정된 공직선거법에 저촉될 소지가 큼

### **5. 심사결과 : 수정가결**

### **6. 소수의견의 요지 : 없음**

### **7. 기타 필요한 사항 : 없음**

【불임】 : 평창군반설치조례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수정안 1부 끝.

# **평창군반설치조례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수정안**

**제안년월일 : 2005년 12월 23일  
제안자 : 조례심사특별위원회**

## **1. 수정이유**

- 가. 향토지와 교양도서 보급에 대하여 조례에 명시하는 것은 지방언론사를 도와주기 위한 것으로 비춰질 소지가 있는 바,
- 나. 이 내용을 삭제하여 의회나 집행부가 언론사를 지원한다는 오해의 소지를 없애고 반장들에 대한 지원은 그대로 유지하고자
- 다. 조문을 적법하게 수정하여 이 법의 목적에 부합할 수 있도록 고치기 위함.

## **2. 수정주요골자**

- 가. 안 제12조(편의제공) 제2항 "군수는 반장의 임무수행 능력배양과 사기진작을 위하여 예산의 범위 안에서 향토지 및 교양도서 보급, 상해보험 가입 등에 필요한 경비를 제공할 수 있다"를 "군수는 반장의 임무수행 능력배양과 사기진작을 위하여 예산의 범위 안에서 상해보험 가입 등에 필요한 경비를 제공할 수 있다"로 수정

# **평창군반설치조례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수정안**

**제안년월일 : 2005년 12월 23일  
제안자 : 조례심사특별위원회**

"평창군반설치조례일부개정조례안"중 다음과 같이 수정한다.

안 제12조(편의제공) 제2항 중 "향토지 및 교양도서 보급"을 삭제한다.

## 수정안 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수 정 안
<p>제12조(편의제공)</p> <p>① (생 략) ② (신 설)</p>	<p>제12조(편의제공)</p> <p>① (생략) ② 군수는 반장의 임무수행 능력배양과 사기진작을 위하여 예산의 범위 안에서 <u>향토</u> 지 및 교양도서 보급, 상해보험 가입 등에 필요한 경비 및 편의를 제공할 수 있다"</p>	<p>제12조(편의제공)</p> <p>① (생략) ② _____</p> <p>_____ 상해보험 가입-----.</p>

# 평창군반설치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안번호	210
------	-----

제출년월일 : 2005. 12. 16  
제출자 : 평창군수

## 1. 제안이유

- 지방행정의 최일선에서 주민과 행정간의 가교역할을 수행하고 있는 핵심인력이나, 최근 들어 생활민원 폭주, 생업지장 등의 사유로 직책 수임을 기피함에 따라 일선행정 업무수행에 장애요인이 되고 있음.
- 또한 지금까지 시행하여 오던 각종 반장 사기진작 시책이 '05.8.4개정 공포된 공직선거법에 저촉될 소지가 있어 본 사업의 지속적인 추진을 위해서는 제도적 보완이 필요한 실정임.
- 이에 따라 반장 직책에 대한 자긍심 고취와 사기진작을 위하여 실질적인 처우개선책을 제도적으로 마련하려는 것임.

## 2. 주요골자

반장의 임무수행 능력배양과 사기진작을 위하여 예산의 범위안에서 향토지 및 교양도서 보급, 상해보험 가입 등에 필요한 경비 및 편의를 제공할 수 있도록 함. (안 제12조)

## 3. 참고사항

- 가. 관계법령 : 별첨
- 나. 신·구조문대비표 : 별첨
- 다. 예산조치 : 별첨
- 다. 입법예고 : 2005.11.7~11.27까지 입법예고 결과 제출된 의견없음

라. 관계부처 승인 : 해당없음  
평창군 조례 제 호

## 평창군반설치조례 일부개정조례안

평창군반설치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2조 본문을 제1항으로 하고, 동조에 제2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12조(편의제공) ② 군수는 반장의 임무수행 능력배양과 사기진작을 위하여 예산의 범위 안에서 향토지 및 교양도서 보급, 상해보험 가입 등에 필요한 경비 및 편의를 제공할 수 있다.

###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 신·구조문 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p>제12조(편의제공) ①반장은 군수가 정하는 바에 따라 각종 잡부금을 면제받으며 읍·면의 공부를 열람, 공공시설의 사용 등 직무수행에 필요한 편의를 무료로 제공받을 수 있다.</p>	<p>제12조(편의제공) ①-----</p>
<p>②(<u>신 설</u>)</p>	<p>② 군수는 반장의 임무수행 능력 배양과 사기진작을 위하여 예산의 범위 안에서 향토지 및 교양도서 보급, 상해보험 가입 등에 필요한 경비 및 편의를 제공할 수 있다.</p>

## 【별첨】

# 관계법령 발췌서

## □ 지방자치법

### 제4조(지방자치단체의 명칭과 구역) ①~④ 생략

⑤동·리에 있어서는 행정능률과 주민편의를 위하여 당해 지방자치단체의 조례가 정하는 바에 의하여 하나의 동·리를 2개 이상의 동·리로 운영하거나 2개 이상의 동·리를 하나의 동·리로 운영하는 등 행정운영상 동·리(이하 “행정동·리”라 한다)를 따로 둘 수 있다.

⑥제5항의 행정동·리에 당해 지방자치단체의 조례가 정하는 바에 의하여 하부조직을 둘 수 있다.

### 제15조(조례) 지방자치단체는 법령의 범위 안에서 그 사무에 관하여 조례를 제정할 수 있다. 다만, 주민의 권리제한 또는 의무부과에 관한 사항이나 벌칙을 정할 때에는 법령의 위임이 있어야 한다.

## □ 지방재정법

### 제17조(기부 또는 보조의 제한) ①지방자치단체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 한하여 개인 또는 공공기간이 아닌 단체에 기부·보조 또는 그 밖의 공금의 지출을 할 수 있다.

1. 법률에 규정이 있는 경우
  2. 국고보조재원에 의한 것으로서 국가가 지정한 경우
  3. 용도를 지정한 기부금에 의한 경우
  4. 보조금을 지출하지 아니하면 사업의 수행이 불가능한 경우로서 지방자치단체가 권장하는 사업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공공기관의 범위는 대통령으로 정한다.

## 【별첨】

## 2006년도 예산(비용) 추계서

분야별	소요예산	비고
직무능력배양	88,440천원  ○ 향토지 보급 : 88,440천원 - 10천 원×737명×12월=88,440천 원	
근무여건개선	9,581천원  ○ 상해보험료 : 9,581천 원 - 13천 원×737명=9,581천 원	
사기진작	36,850천원  ○ 반장활동비 : 36,850천 원 - 50천 원×737명=36,850천 원	
총계	134,871천원	